

『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1월 26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도시환경국장 박 수 원

나. 제안이유

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제한을 5년으로 규정하여 중복지원 검증을 강화(안 제24조제3항제1호)
-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정량적·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(안 제25조제2항, 안 별표 1)

- 지원 단지의 선정·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(안 제25조제4항, 제5항)
-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연임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보조금 심의기능 강화(안 제27조제3항, 제4항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10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- 본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,
 -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 - 예산낭비 사례방지, 사업관리 부실 우려 해소,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등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